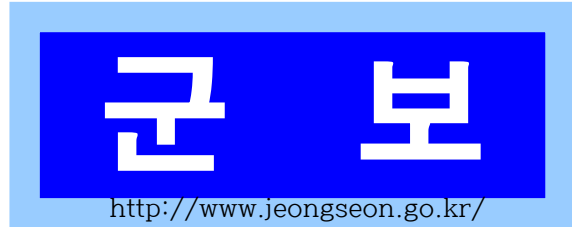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07호 2016. 12. 30. (금)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551호 정선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552호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5
- 정선군 조례 제2553호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7
- 정선군 조례 제2554호 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조례 10
- 정선군 조례 제2555호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1
- 정선군 조례 제2556호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18
- 정선군 조례 제2557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 정선군 조례 제2558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정선군 조례 제2559호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 정선군 조례 제2560호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정선군 조례 제2561호 정선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39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6-142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41
- 정선군 고시 제2016-144호 2017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 .. 42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6-1103호 대부업체 소재지확인 공시송달 공고 43

조 례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51호

정선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에 따른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원만한 그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공정책”이란 군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수립·시행 또는 제정·개정·폐지를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의 효율적 예방과 원만한 조정·해결을 위하여 수행하는 군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 해당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 전반의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2장 예방 등 관리

제5조(기본원칙)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책을 수립·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주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석을 실시한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서에는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매뉴얼 및 전문가 등의 활용)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

2.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가. 제5조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나. 갈등영향분석

3. 제7조에 따른 매뉴얼의 작성·활용

4. 제12조에 따른 협의회의 참여 등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가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공공갈등 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공갈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적 시책의 마련·추진

2. 관리방식의 발굴·활용

3.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제12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

- 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주재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해당 갈등발생 사안의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 소관담당이 된다.

-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는 당사자의 개최요구를 포함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때는 제외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심의·자문안전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서 제척된다.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안전을 심의·자문하는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 제11조(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4장 공공갈등 조정협의회

-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조정·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사안별로 정선군 공공갈등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의장을 호선하는 회의는 출석협의위원 중 연장자가 주재한다.
- ③ 협의위원은 군수가 당사자, 전문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④ 협의회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해체 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위원간의 합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 소관 담당이 된다.

제13조(합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해당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② 제1항의 합의결과문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군수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 심의·자문”은 각각 “협의회, 의장, 부의장, 협의위원 및 조정·협의”로 본다.

제5장 보칙

제15조(비밀엄수) 위원, 협의위원, 관계공무원·전문가 등 공공갈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모든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정책이나 현안 또는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 증가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절차를 만들기 위함.

주 요 내 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4조)

○ 갈등영향분석 및 매뉴얼 및 전문가등의 활용(안 제6조~제7조)

○ 공공갈등심의위원회(안 제8조~제11조)

○ 공공갈등 조정협의회(안 제12조~안제14조)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52호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정선군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5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여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군의 관할지역에 본사·본점, 지사·지점 또는 사업장(제3조에서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장 등의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2.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3.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 법인·개인,

또는 사용자·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정선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이유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어 고용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에 대한 해소가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실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역할과 개입이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 사회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고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증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안 제3조)
-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사용자의 책무 (안 제4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안 제5조 ~ 안제6조)
-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준용(안 제7조)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53호

정선군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선군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효율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놀이기구”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군수가 아닌 사람(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각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도·점검계획) ① 군수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정선군 어린이 놀이기구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기구 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와 해소 대책
 6. 유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다른 관리주체에게도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5조(퇴장명령 등)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 등 행위
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합동점검 등)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 차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보호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적합한 장소에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안전지킴이 활용)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촉된 안전지킴이에게는 안전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별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 사무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 ② 제1항의 업무분담부서는 군수가 아닌 관리주체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며,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지도·점검계획의 효과적 추진 및 해당 사업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7조에 따른 지킴이의 활동지원, 제9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정선군 어린이놀이 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 정선군 어린이의 안전 및 건전한 정서함양 기여
-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안 제4조)
-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등 9개 사항
 - 다른 관리주체에게 자체계획 수립토록 지도
- 어린이놀이시설 퇴장명령 등 (안 제5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6개 사항
- 합동점검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노후시설에 대한 해마다 한차례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
- 예산 확보 및 지원 (안 제9조)
- 지도·점검계획의 효과적 추진 및 해당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54호

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구조기준을 완화하는 적용 대상은 그 구조 및 안전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한 사도에 한정한다.

제4조(구조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관리) 사도는 해당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사도를 개설하기 위한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목적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사도의 구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55호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을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공업화박관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 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와 공업화박관강구조(PEB)시설물이나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제5조제2호 중 “1.5미터이내”를 “1미터 이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물의 지붕면의 구간(최상층, 옥탑 층, 여러 층에 복합)으로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제6조 전단 중 “5시간이내”를 “3시간 이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3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부터 규정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④ 농·축산시설물(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 버섯재배, 양어장 등)의 관리자는 대설시점부터 난방기 가동을 최대한 실시하여 실내 열이 외부로 전달되어 지붕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도록 조치하고, 시설물 적설 규모가 클 경우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를 실시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 ²)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 고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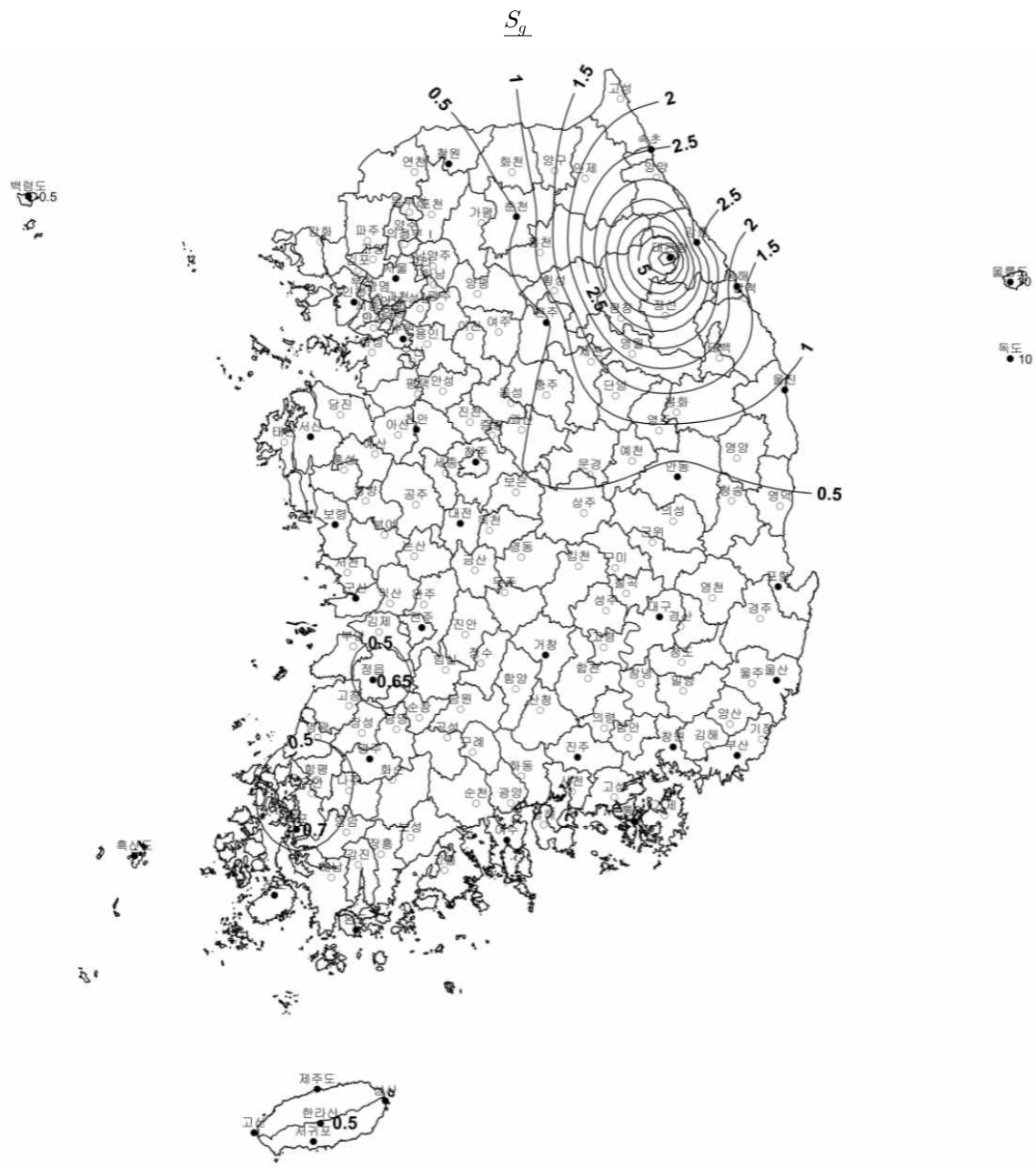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²이상으로 한다.(KBC 2009)

※ “예” 2.0초과 2.5이하 지역 계산 : 35.0cm×1.5=52.5cm

제설·제빙 예보적설량 계산 : A70.0cm+B35.0cm÷2=52.5cm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6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²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신설> 6. (생략) <신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	<u>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제27조에 따라 ----- -----.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8. (현행 제5호와 같음) 6. “공업화박관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9. (현행 제6호와 같음)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 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와 공업화박관강구조(PEB)시설물이나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

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이면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내의 구간

<신 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5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현행과 같음)

2. -----1미터
이내-----

3. 시설물의 지붕면의 구간(최상층, 옥탑 층, 여러 층에 복합)으로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
----- 3시간 이내-----
-----.
-----.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3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설 및 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제설·제빙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부터 규정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④ 농·축산시설물(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 버섯재배, 양식장 등)의 관리자는 대설시점부터 난방기 가동을 최대한 실시하여 실내 열이 외부로 전달되어 지붕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도록 조치하고, 시설물 적설 규모가 클 경우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를 실시한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
-----.

개 정 이 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등 상위법령 개정
따라,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 및 제설 시기 등을 규정한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하여 주민의 인명보호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건축물 및 제설 의무 구조물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화박판강구조 등의 건축물에 대한 제설책임 범위와 시기 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시설물의 지붕, 농·축산시설물에 대한 제설·제빙 방법사항을 신설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56호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2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며, 특정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다.

1.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57조에 따라 두는 정선군계획위원회
2. 「정선군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라 두는 정선군건축위원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전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전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

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屬)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주사로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②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군은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대응 의무의 정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군 실·과·단·소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도시건축과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군 실·과·단·소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건축과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이전에 수립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8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등
 -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 등, 가드레일 등
 -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환경조형물
 -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 다. 벽화
 - 라. 슈퍼그래픽
 -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썸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제 정 이 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안내 및 군민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 진흥계획 수립·변경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제안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참여방안 규정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 진흥위원회 위원장 : 부군수, 구성인원 20명 이내
 - 위원회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주사로 지정
 -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해당직 재직기간), 공무원외(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공공디자인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 군 실·과·단·소장은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 사업계획 시 도시건축과장에게 사전 협의토록 규정
 - 군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는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준수를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
 -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함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57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0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24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별표 26 아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및 개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등)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등)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u>정신병원 및 격리병원</u> 3. ~ 12. (생략) ②·③ (생략)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u>격리병원</u> 3.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사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의료기관 건축제한 관련 차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2조)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함(안 제41조)
- 상업지역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 합리화 함(안 별표 9부터 별표 12)
-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함(안 별표 24)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58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30명”을 “1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해복구 및 국가행사 개최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축조하는 대회관련 시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법 제25조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 건축사회 정선군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녹지”를 “녹지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제27조제1항제2호 중 “1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38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입주자 공유의 관리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별표 4의 하단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 ----- 150명 -----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③ 위원의 자격·임명·위촉과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기준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라. ----- -----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8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8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 ----- ----- . 다만, 재해복구 및 국가행사 개최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19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축조하는 대회관련 시설
<신 설>	제20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법 제25조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 건축사회 정선군지역건축사회와 협의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자연녹지의 대지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③ (생략) <신설> <신설>	하여 고시한다.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 -----<u>녹지지역</u>----- ----- -----.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 2천제곱미터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38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입주자 공유의 관리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

개 정 이 유

-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규제개혁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건축위원회 구성 제한 인원 확대 및 보궐위원 임기를 규정함.(안 제8조)
- 재해복구 및 국가행사 개최를 위한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안 제18조)
- 올림픽대회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축조신고로 완화함.(안 제19조)
- 건축물 공사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20조의2)
- 녹지지역안의 건축물 조경 설치 및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안 제27조)
-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감경규정을 신설함.(안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3까지)
- 부속용도 건축물의 공시기준을 완화함.(안 별표4)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59호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득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3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를 “관리주체”로, “유지·보수 등”을 “유지·보수 및 입주자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제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의3”을 “법 제34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9조”를 “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0조”를 “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주체는 제7조제3항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되며,”를 “관리주체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52조”를 “법 제71조 및 제8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2조제5항”을 “법 제2조 및 「주택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2항제6호”를 “법 제71조제2항제9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6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67조제1항”을 “영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앞에 “제4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제5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05.>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입주자 ☐ 사용자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입주자 ☐ 사용자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필요한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행정구역 안에서 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법을 의제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 -----.
제3조(목적) 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	제3조(목적)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지원대상은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 업무 중 다음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 관리주체----- ----- - 유지·보수 및 입주자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제비용 등--.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입주자 공유인 기존 복리시설(단, 행위허가 및 신고대상을 제외한다)	3. ----- - 제외한다)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제비용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 법 제34조제3호----- ----- -----.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법 제32조----- -----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2. 법 제33조-----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8조(착수신고 등) ①관리주체는 제7조제3항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착수신고 등) ①관리주체는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군수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3. (생략)

② (생략)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제1항의 "당사자"란 법 제42조제5항에 의한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텔링주택조합"을 말한다.(이하 이장에서 같다)

제12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중 법 제52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제13조(구성 등) 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영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6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는 위원으로 보궐하고, 임기는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회의개최일 기준으로 잔임기간이 6월미만이고 1인 이내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생략)

- ②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민(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 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단,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텔링주택조합이 입주자·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자체의결서로 대신한다.
2. 대표자 선정서류(3인이내로 한다)
3. 영 제67조에 의한 추천위원 명단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

<삭 제>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법 제71조 및 제80조-----

-----.

- ②----- 법 제2조 및 「주택법」 제2조 -----

제12조(기능) ----- 법 제71조제2항제9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구성 등)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
-----.

- ②----- 영 제87조제2항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4.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15조(임시위원 등 선정) ①제14조제2항제3호의 추천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거나 추천받은 자가 거부할 경우 또는 위원 제척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 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추천 또는 재추천을 의뢰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의뢰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추천자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내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21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제1항의 "당사자"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하 이장에서 같다)

제22조(조정신청) ①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서(단,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우선분양 전환대상자의 10분의 2의 상의 동의서 첨부) 단, 임대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신청 함

2. 대표자 선정서류

3.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2항에 의한 추천위원 명단

4.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23조(회의 등) ①조정위원회의 회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입주자"는 "임차인" 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당사자"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②제1항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함에 있어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서식"은 해당사항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8호 내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한다.

제5장 벌칙

제24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01조의 과태료 처분권자인 군수는 영 제1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

②처분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를 부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다.

③ 처분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 신청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하위조례 정비
- 지역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일부조항의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 공동주택 임원선거 등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투표시스템도입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시 지원근거 마련

주 요 내 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조례를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5조의2까지,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지역주민에 규제로 작용하는 일부조항 수정 및 삭제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안 별지 제2호서식)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60호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경기 및 행사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
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 노인 단체의 경기 및 행사

제14조제2항 중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미”를 “이미”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관리자가 기부채납 의사를 표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경기 및 행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 노인 단체의 경기 및 행사 7. (생략) ②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③·④ (생략)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삭제> 5.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100분의 80-----.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경기 및 행사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 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 노인 단체의 경기 및 행사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생략) ②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이미 ----- ----- -.
제24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또는 설비는 당해 시설물 준공 또는 설비완료와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신설>	제24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관리자가 기부채납 의사를 표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감경에 대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12조)
 ○ 사용허가 취소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4조)
 ○ 기부채납 전제 조항을 시설물의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 시 즉시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수탁관리자가 기부채납 의사를 밝힐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24조)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61호

정선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말한다.

1. 불용의약품: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해당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사용할 경우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
2. 폐의약품: 군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의 경과 또는 변질·부패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불용의약품의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에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 교육·홍보 추진
 2.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이 조례에서 “관리”라 한다)방법에 관한 관리체계 지침 마련과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3.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의 마련·추진
- ② 군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 최소화
 2. 발생한 불용의약품을 보건소 또는 군 소재 약국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

제5조(관리방법) ① 보건소장, 약국의 약사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집할 경우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정선군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월 한 차례 이상 거점 장소까지 운반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표창)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이나 사용기간 경과·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과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군민 건강증진 도모하고자함.

주 요 내 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군수의 책무 및 관리방법(안 제4조~제5조)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6-142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강원도고시 제2016-509호(2016.12.16.)로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40번지

다.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994	-	4,994	100.0	
주거 지역	소 계	4,540	증)454	4,994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4,540	증)454	4,994	100.0	
녹지 지역	소 계	454	감)454	-	-	
	자연녹지지역	454	감)454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40번지	자연녹지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454	250% 이하	· 정선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라.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군 고시 제2016-144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의 규정에 따라서 정선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1. 통제구역 지정목적 : 산불예방, 산림보호

2. 구역면적

가.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구 분	관내 민유림(ha)	입산통제구역(ha)
	38,100	12,768

나. 등산로 개방·폐쇄구역 지정현황

구분	합계		개방		폐쇄	
	노선수	거리(km)	노선수	거리(km)	노선수	거리(km)
	41	148.5	10	44.2	31	104.3

3. 입산통제기간

가. 봄 철 : 2017. 2. 1 ~ 05. 15.(104일간)

나. 가을철 : 2017. 11. 1 ~ 12. 15.(45일간)

※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에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을 금지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입산통제기간 내에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 구역을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의1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 상에 처하게 됩니다.

2016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공 고

정선군공고 제2016-1103호

대부업체 소재지확인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정 선 군 수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2. 공고기간 : 2016.12.26. ~ 2017.1.25.(30일간)
3. 대 상 자

연 번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 록 연월일	사업장 소재지
1	영화전당사대부	강*우	강원정선2015-대부20	2015-12-28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649 (영서빌딩)
2	한마음대부전당사	김*원	강원정선2014-대부16	2014-10-08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41

4.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대부업체의 소재불명에 따른 등록취소
- 처분사유 : 대부업체의 소재불명

5. 공시송달내용

상기 대부업자는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소재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등록이 제한됩니다.

6. 기타사항

본 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군 지역경제과(☎033-560-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